

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9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09월 2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).

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수당) ② <u>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당) ② <u>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까지 포함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</u></p>	<p>제4조(수당)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,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“심의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2. 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

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

검토·심의한 경우까지 포함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전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조(수당) ① <u>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</u></p> <p>② <u>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당) ① <u>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“심의 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u></p> <p>2. <u>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</u></p> <p>② <u>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</u></p>

한 경우까지 포함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